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1. 28 선고 2017가단679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1. A

2. B

3. C

피 고 1. D

2. E

3. F

변론 종결 2018. 11. 14.

판결 선고 2018. 11. 2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E, F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1) 피고 D은, 주위적으로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 8. 28. 접수 제1081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원고 A에게 83,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55,714,285원과 2016.7. 23.부터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주위적, 예비적으로 G와 피고 E 사이에 체결된 2016.7. 21.자 주식양수도계약, G와 피고 F 사이에 체결된 2016. 7. 21.자 주식양수도계약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9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1) G(이하 망인)는 배우자 원고 A와 사이에(1982. 4. 15. 혼인신고) 자녀로 원고 C, B를 두었는데, 2016. 7. 23. 사망하였다.(2) ①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7. 12. 5. 피고 D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2003. 5. 27. 망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후,2015. 8.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8. 28. 접수 제108154호 피고 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2 서광주세무서장은 2017. 12. 1. 원고들에게 신고누락 확인된 사전증여재산 및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대금 중 3억2,000만 원을 상속추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③ 원고들은 위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D이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원고들의 상속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3) ① 망인은 2007. 8. 9. 피고 D에게 별지2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별지3 확인서도 작성하여 주었다. ② 망인 명의 (주)H 각 2,100주에 관하여, 망인과 피고 E, F 사이에 2016. 7. 21.자 각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 피고 E, F에 대한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요지 : 2016. 7. 21. 당시 망인은 의사능력이 없었고, 피고들을 만난 사실도 없으므로 2016. 7. 21.자 각 주식양수도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2) 판 단 : 직권으로 관련 법리1)에 따라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들의 실질주주 주장을 다투지 않는 이상(원고들은 별지 2, 3의 기재내용을 다투지 않고, 단지 피고 D이 양도대금 2,050만 원을 망인에게 지급한 자료가 없다고 주장할 뿐이다),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소가 갖추어야 할 확인의 이익을 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요지 : ①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15. 8. 26.자매매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망인이 2015. 8. 26.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류분부족액의 반환을 구한다. ② 피고D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이 라고 주장하면서 다툰다.

(2) 판 단 : ▷ 관련 법리2)에 따라 본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어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D의 명의수탁자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매수한 당사자로서 그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위 등기가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들이 조세불복절차에서 피고 D이 망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D의 '자신이 2010. 8.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직접 거주하였고 2010. 1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임대하여 보증금을 수령하였으며, 재산세를 부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원고들은 다투지 않았다. ② 망인이 2003. 5. 27.자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피고 D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는 물론 이후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했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다. ③ 특히 피고D은 "내가 집 문제도 다 정리해줬고, 내가 더 정리해 줄 것도 없어. 이제"라고 기재된 망인과의 통화 녹취록(2015. 9. 22. 녹음)을 제출하면서 '이는 망인이 이 사건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일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원고들은 아무런 반박 주장을 내놓지 않았다. ▷ 원고들의 증여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유류분반환 청구도 이유 없다. ▷ 따라

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 E, F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원목

별지1

목 록

가. 1층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 아파트 제401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스타브지붕 23층 아파트

1층 318.202㎡, 2층 304.790㎡

3층 304.790㎡, 4층 304.790㎡

5층 304.790㎡, 6층 304.790㎡

7층 304.790㎡, 8층 304.790㎡

9층 304.790㎡, 10층 304.790㎡

11층 304.790㎡, 12층 304.790㎡

13층 304.790㎡, 14층 304.790㎡

15층 304.790㎡, 16층 304.790㎡

17층 304.790㎡, 18층 304.790㎡

19층 304.790㎡, 20층 304.790㎡

21층 304.790㎡, 22층 304.790㎡

23층 304.790㎡

나.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제7층 제702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벽식조

면 적 : 134.895㎡

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 대 38448.1㎡

라.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38448.1분의 102.522 ㎡.

별지2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양도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양수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양도인(주) 의 보통주식 4,100 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인바, 금번 본인 소유 보통주식 4,100 주를 양수인에게 양도하
 기로하고 양도인도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명 날인함.

1. 양도가액 : ~~₩ 20,500,000~~
2. 1주당 액면가액 : ~~₩ 5,000~~
3. 대금지급 : 일시불

2007년 8월 9일

양도인 :

양수인 :

첨부서면 : 양도인 인감증명서 1통.

음지 4호

별지3

확 인 서

본인 는 (주)
 의 본인 명의의
 주식 4,100주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이며 의 주식 반환 요
 청이 있을시 언제든지 주식을 반환해 주기로
 한다.

위 확인인

홍제5동

- 1) 확인의 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될 뿐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고(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 다5622판결 참조),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9257 판결 참조)

2)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2015다215823 판결 참조).